



규 칙

서울특별시 시민회관건립 자문위원회  
회 규칙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시장  
1973년 1월 18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283 호

서울특별시 시민회관건립  
자문위원회 규칙

제 1 조 (설치) 시민회관 건립에 관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기술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민회관건립 자문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 2 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  
을 심의한다.

- 1. 시민회관 신축설계 및 공사시  
행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 2. 시민회관신축 자재심의에 관한  
사항
- 3.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시민회관  
신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  
술적인 사항

제 3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 1. 제 2 부시장 및 국장급 6 명 이내

2. 건축, 설비, 미술, 조각, 실내  
장치등에 관한 사계의 전문기술  
가 30 명 이내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저명인사 4 명 이내

②전항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 2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제 4 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직  
무를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1. 기획조정분과위원회
- 2. 건축분과위원회
- 3. 설비분과위원회
- 4. 미술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 5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분과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6 조 ( 회의 )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도 전 각항에 의한다.

제 7 조 ( 간사와서기 ) ①위원회에 간사 2 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건설국 영선과장과 도시계획국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 8 조 ( 수당등의지급 )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민회관건립업무 협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3년 1월 18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284 호

서울특별시 시민회관건립업무 협의위원회 규칙

제 1 조 ( 설치 ) 시민회관 건립에 필요한 각부처간의 업무 협조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회관건립업무 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 2 조 ( 직무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민회관건립 기본계획, 건축자재 및 기술에 관한 사항
2. 시민회관건립 부지확보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 조 ( 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 인과 부위원장 1 인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유관 중앙부처의 국장급 10명 이내

2. 서울특별시 국장급 5명 이내

②전항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 4 조 ( 위원 장 의 직 무 )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 회 의 )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6 조 ( 간 사 와 서 기 )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건설국 영선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 7 조 ( 수 당 등 의 지 급 )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8 호

서울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를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3. 1. 17.

서울특별시장

노 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기정	소로	3		6m	100m	연희동 78-4	연희동 78-1	
폐지	"	3		6	100"	"	"	

도면 생략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5 호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  
지정취소 및 변경공고

당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

가 폐업 및 변경사항이 있었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 및 변경공고 한다.

1973. 1. 16.

서울특별시장

1. 지정취소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취소사유
508	근대기회주식회사	송만수	성북구정릉동산1	천막지, 모포, 방모사	72.11.30 폐업

2. 변경  
변경전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622	삼진사	김용주	서대문구응암동 461	조화
448	신성기업사	김길연	성동구자양동 328-1	혜타

변경후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622	신아교역상사	김용주	서대문구응암동 56-13	조화
448	신성기업사	정연택	성동구자양동 328-1	혜타

사 령

◎ 1973. 1. 11.

공무원교육원 (환경순찰관 조건부지방서기관 김원경 실과견)

시보 근무를명함 (73.1.10-3.9)

지방서기관에임함 (73.3.10자)

3호봉을 급함.

◎ 1973. 1. 15.

신촌 지방전기기사 최중재

서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시흥동 지방전기기사보 구운희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시흥동 지방토목기원보 유용의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시흥동 기합부공무원 정수일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구획정리 1과 지방토목기원보 유방희

지방공무원법제 63 조제 1 항 3 호

의 규정에의거 휴직을명함.

신촌 조철수 이남훈

서대문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신촌 조철수 황정일

서대문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 1973. 1. 16.

종로구 지방행정서기 황상선

마포구근무를 명함.

오병익

지방약무기원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의약과근무를 명함.

이광재

조건부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종로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제순애

조건부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이병국

조건부지방보건연구원에 임함.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 1973. 1. 17.

건축과 조건부지방건축기사보 경현덕

<p>지방건축기사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건축과근무를 명함.</p>	<p>영등포구 농림기원보 유원준 녹지과 (어린이대공원) 파견근무를 명함.</p>
<p>동대문구 지방토목기원 정세영 수도사업소 73.6.30 까지 급수과 파견근무를 명함.</p>	<p>토목과 지방토목기원 조종식 녹지과 (어린이대공원). 파견근무를 명함.</p>
<p>중부병원 지방간호기원 정경자 경찰국파견근무를 명함.</p>	<p>주택건설과 지방전기기사보 강석희 지하철건설본부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 지방토목기원보 나석근 수도사업소 주택건설과파견근무를 해제함.</p>	<p>민방위과 지방토목기사보 이강수 성동구수도사업소근무를 병함.</p>
<p>건축과 지방행정사무관 김병석 지방공무원법제 65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p>	<p>자동차 지방기계기원보 홍영길 운수사업소 서부위생처리장근무를 명함.</p>
<p>© 1973.1.18.</p>	<p>서대문구 지방토목기원보 서기석 수도사업소 도시가스사업소근무를 명함.</p>
<p>기전과 지방기계기원 김용기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p>	<p>자동차 지방기계기사보 문경연 운수사업소 종로구근무를 명함.</p>
<p>기전과근무를 명함. 복악공원 지방농림기사보 공홍철 관리사무소 녹지과 (어린이대공원)</p>	<p>자동차 지방기계기원보 송택근 운수사업소 자동차정비창근무를 명함.</p>
<p>파견근무를 명함.</p>	<p>자동차정비창 지방기계기원보 한상태 연료과 근무를 명함.</p>

종 로 구 기 계 기사 보

김 관 수

중 기 관 리 사 업 소 근 무 를 명 함 .

지 방 기 계 기사 보 에 임 함 .

◎ 1973.1.19 .

3 호 봉 을 급 함 .

지 하 철 건 설 본 부 지 방 행 정 주 사 김 진 구

중 기 관 리 사 업 소 근 무 를 명 함 .

지 하 철 건 설 본 부 관 리 과

기 전 과 지 방 기 계 기사

박 덕 응

운 영 계 장 직 무 대 행 을 명 함 .

서 울 특 별 시 장